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8. 10 선고 2022가단533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28.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79,666,6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666,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C'의 대표자인 B는 2016. 2.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90,000,000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보증금액을 76,5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간을 2016. 2. 18.부터 2017. 2. 17.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이 57,800,000원으로 변경되고, 보증기간이 2020. 2. 14.까지로 연장되었다.

2) 그 후 B가 위 대출 원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9. 11. 22. 위 대출금 상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2. 11. D에 대출 원금 51,421,804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9048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등 57,701,0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7,421,80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 6. 2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이 2020. 7. 15. B에게 송달되었다. B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2020. 7. 30. 확정되었다.

4) 2023. 5. 15. 기준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의 채권액은 79,666,610원[= 대위변제금 57,421,804원 + 대지급금 766,551원 + 지연손해금 21,478,255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19. 6. 19. B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1978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8. 열린 위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이혼 등 소송사건을 ‘종전 이혼사건’이라 한다). 종전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를 지칭하고, ‘피고’는 B를 지칭하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한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위 절차 이행에 등록세 등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 명의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 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연금액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는 2019.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59590호로 2019. 8. 28.

재산분할(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1978)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1) 2019. 8. 28. 열린 종전 이혼사건 조정기일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B가 자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성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그 가액이 403,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것이었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207,421,804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B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 경우,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피고와 B가 혼인생활을 한 기간과 그 혼인기간 중 B가 주로 소득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혼으로 인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조정성립 당시 피고에게는 적극재산으로 216,810,000원(= 기지급 계약금 49,810,000원 + 조정기일이 열린 2019. 8. 28. 당시 프리미엄의 액수 176,000,000원) 상당인 화성시 E건물(이하 'E건물'이라고만 한다) F호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B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합계 619,810,000원(= 403,000,000원 + 216,810,000원)에서 B의 채무액 합계 207,421,804원을 뺀 412,388,196원이 되고, 그 중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50%)에 따른 금액은 206,194,098원(= 412,388,196원 × 1/2)이다. 그렇다면 이미 피고는 상당한 재산분할로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206,194,098원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B와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범위인 206,194,098원보다 263,615,902원[= 283,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03,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 명의로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 + 216,810,000원(이 사건 수분양권의 가액) - 206,194,098원]을 초과하여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G조합 명의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가 2021. 12. 2.경 G조합에 대출금 150,000,000원 중 83,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채권액인 79,666,61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9,666,6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와 피고 사이의 장남인 H이 불치병으로 2012년경부터는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혼 후 피고가 혼자서 H을 돌보며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로서는 B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수분양권도 당시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종전 이혼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참조).

나.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서증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J, I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피고는 1996. 4. 10. B와 혼인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9. 8. 28.까지 23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을 담당하였다. ② B와 피고 사이의 자녀인 H(K생)은 2006년경 근육 관련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뒤센근디스트로피’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2012년경부터는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되었는데, 피고와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여 이혼 전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피고는 B와 이혼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H를 부양하고 있다. ③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1978호로 이혼 등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는 H의 부양료1)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고,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4항에는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B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고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위한 급부와 치료비와 생활비 등 H에 대한 부양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④ 감정인 I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9. 8. 28. 기준 이 사건 수분양권의 프리미엄 액수에 대한 감정촉탁을 받고, E건물은 2018. 8.경 분양을 하여 주택법 등 당시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3년간 수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가 2021. 9. 17.부터 전매가 가능하게 되어 그 이전의 수분양권 거래사례 수집이 불가능하였고, 부득이 전매금지가 해제된 후인 2021. 10. 19.부터 2021. 12. 21. 사이에 이루어진 위 아파트의 수분양권 거래사례 4건을 기준으로 프리미엄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시점수정 등을 거쳐 2019. 8. 28. 기준 이 사건 수분양권의 프리미엄 액수를 176,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9. 8. 28. 당시에는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전매금지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던 상황이었던 점, 2019. 8. 28.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수분양권의 실제 매매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2019. 8. 28. 기준 이 사건 수분양권의 프리미엄 액수가 감정인 I의 평가금액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9. 8. 28. 당시 피고가 E건물 F호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은 총 분양대금 408,100,000원 중 계약금 40,810,000원과 1차 중도금 40,810,000원, 2차 중도금 40,810,000원이었고, 그 중 1차 중도금과 2차 중도금은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중도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것인데, B와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전매금지가 해제된 후 형성될 프리미엄의 액수까지 감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1) 원칙적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양의무를 지는 부부 중 일방과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H의 경우와 같이 부모의 이혼 당시 이미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속적인 병원치료 및 간호까지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정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